

#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경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30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2일  
발 의 자 : 김경우, 경만선, 권수정,  
권영희, 김경영, 김용석,  
김제리, 김화숙, 박기재,  
서윤기, 신정호, 이상훈,  
이영실, 이정인, 이준형,  
이호대, 임종국, 장인홍,  
조상호, 채유미 의원(20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결산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.
-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재단의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함 (안제16조제3항)

나.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. (안제16조 제4항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업연도가”를 “회계연도가”로, “3개월”을 “2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재단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<u>사업연도가</u> 끝난 후 <u>3개월</u>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6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회계연도가</u> ----- <u>2개월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재단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